

■ 세 미 나

전문의 자격 시험 소개

황 인 홍

고시이사, 한림의대

1. 시험 관련 법률 규정

의료법(법률)

제55조 (전문) ①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못한다. ③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(대통령령)

제17조 (전문의자격의 인정)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1.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. 2.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. 3.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한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③ 전문의자격시험의 방법, 응시절차 기타

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(보건복지부령)

제13조 (시험과목 및 방법) ①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각 당해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. ② 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,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,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. 다만, 각호의 1에 해당된 자가 당해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. 1. 영 제 17조 제 1항 제 2호에 해당된 자로서 외국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. 2. 영 제 17조 제 1항 제 3호에 해당된 자로서 국내외 의과대학, 치과대학,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4년 이상의 교육 또는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자.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2차시험에 불합격한 때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. ⑤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.

2. 응시 자격 심사

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의사협회 및 가정의학회에서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응시자격 심사를 거치게 된다.

- 규정된 수련 과정 이수 여부(수련 이수 증명서)

황인홍: 전문의 자격 시험 소개

- 논문 제출
- 전공의 수첩

3. 시험 내용

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되며, 각각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시행된다.

시험의 형식

- 1차 시험 : 객관식 160문항 (2000년도)
- 2차 시험 : 슬라이드 환등 시험 50문항 (2000년도)

발전 방향

- 1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로 문항수는 상향 조정
- 2차 시험은 현재의 환등 시험에서 실기 시험으로 전환 준비 중

시험의 내용

- 1차 의료를 시행하는 의사로서 알아야할 최소한

1차 시험 내용 분류

내 용	문항수
가정의학 총론	13
감염 및 기생충 질환	20
중양 및 혈액 질환	11
내분비 질환	10
정신 및 행동 질환	9
신경 및 감각기 질환	13
순환기 질환	13
호흡기 질환	8
소화기 질환	16
피부 질환	7
근골격 질환	11
비뇨생식기 질환	10
임신 및 주산기 질환	11
기타 증상 및 증후	8
계	160

의 지식

- 2차 시험의 내용도 1차 시험에 준함

4. 전문의자격시험과 관련된 정보

- 학술 대회에서 고시 세미나
- 대한가정의학회 홈페이지 (www.kafm.or.kr): 회원계시판에 질의(실명)